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민형배·신영대·서미화

이수진 · 노종면 · 이정문

복기왕 • 어기구 • 김문수
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,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.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.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 위사태로 규정하고, 국가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.

또한 사망,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조 및 제32조의2).

법률 제 호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 투하되는 사태

제32조의2의 제목 "(수습 및 복구)"를 "(수습·복구 및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민방위사태로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신체적 부상・장애 및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
- 2. 정신적 · 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
-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 및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

해당하는 지원

- 2.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·결 정한 사항
-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피해액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 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민방위"란 다음 각 목의 어	1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(이			
하 "민방위사태"라 한다)으로			
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			
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			
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			
방공(防空), 응급적인 방재(防			
災)・구조・복구 및 군사 작			
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			
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.	<u>.</u>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		
	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이		
	투하되는 사태		
제32조의2 <u>(수습 및 복구)</u> (생	제32조의2(수습・복구 및 지원)		
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		
	<u></u> 이		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제2조제1호라목에		
	따른 민방위사태로 생명, 신체		
	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		
	대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	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신체 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신체적 부상·장애 및 그 후 유증에 대한 치료비
- 2. 정신적·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
- ①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재산 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 및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 법」 제66조제3항제2호부터

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
- 2.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에 서 심의·결정한 사항
-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민방 위사태로 사망하거나 장애 또 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 급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

른 피해액 지원 및 특별위로금지급에 관한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